

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!

성북구



수신자 수신자참조
(경유)

제목 선금지급 결정안내(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)

1. (주)피엠에이엔지니어링 선금요청(2015.09.03.) 관련입니다.
2.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및 행자부예규 제20호(2015.04.10.)에 의거 지급결정 사항을 통보하오니 계약상대자는 사용제한 사항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관리부서에서는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가. 용역명 :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

나. 계약상대자(공동이행)

- 주식회사 피엠에이엔지니어링 대표: 유형식
- 건축사사무소 건축공작소 반 대표: 김미정

다. 계약금액 : 금205,000,000원(금이억오백만원)

- 주식회사 피엠에이엔지니어링 : 금143,500,000원(금일억사천삼백오십만원)
- 건축사사무소 건축공작소 반 : 금61,500,000원(금육천일백오십만원)

라. 신청금액 : 금88,081,180원(금팔천팔백팔만일천일백팔십원)

- 주식회사 피엠에이엔지니어링 : **금61,656,830원(금육천일백육십오만육천팔백삼십원)**
- 건축사사무소 건축공작소 반 : **금26,424,350원(금이천육백사십이만사천삼백오십원)**

마. 선금의 사용제한

- 수령한 선금을 당해용역계약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등 당해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
-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함
- 선금잔액을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(단, 보증기관 수락등 절차에 의한 양도시는 가능)
-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.

다만,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 이자 상당액(일반은행의 여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)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

- 기타 용역계약특수조건 각 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
바. 선금 정산서류 제출 : 전액 사용시 제출

사. 서류 제출 : 선금청구서, 세금계산서, 선금보증서 제출. 끝.

성북구청장

수신자 주거정비과장, 주식회사 피엠에이엔지니어링, 건축사사무소 건축공작소 반

주무관 **황문호** 계약담당 **신영훈** 재무과장 **최상균** 기획경제국장 09/09
이용식

협조자 지출담당 **박윤숙**

시행 재무과-15814 () 접수 ()

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(삼선동5가) / <http://www.seongbuk.go.kr>
전화 02) 2214-4023 /전송 02) 2241-6557 / hopoya@sb.go.kr /